

수원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12.10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사회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① 센터에서는 본 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,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사회봉사단 및 봉사활동 지원과 업무 협조
2. 봉사관련 홍보 및 교육
3. 자체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
4.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
5. 봉사 수요처의 물색 및 관련 기관과의 봉사활동 내용 협의
6. 기타 봉사활동에 관련된 사업

제3조(조직) 센터에서는 센터장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과 기부금 및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7조(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) 교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사회봉사센터는 2012년 3월 1일자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.